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 1997.12.17.>, <23차 개정 2023.05.1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교수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04.13., 2019.08.23>

제 2 조 (적용범위) ① 교수업적평가는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04.13, 2012.10.19., 2019.08.23>

② 휴직기간이 평가 대상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04.13, 개정 2019.02.14., 2021.12.09>

③ 평가 대상기간 중 연구년인 교원의 경우, 교육영역 점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04.13, 개정 2018.03.03., 2021.12.09>

제 3 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제 4 조 (평가주기 및 시기) ① 교수업적평가는 정기업적평가와 특별업적평가로 구분하며, 정기업적평가는 연 1회 시행하되, 이 규정 제10조에 의거 등록한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04.13., 2016.09.01>

② 특별업적평가는 재임용 대상자의 정기업적평가를 할 수 없는 심사대상기간의 업적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단, 특별업적평가의 평가점수는 재임용심사에만 활용하며, 재임용 후 대상자는 정기업적평가를 받아야한다. <신설 2016.09.01.>

제 2 장 평가영역 및 기준

제 5 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교육, 연구, 산학, 봉사로 구분하며, 각 영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26.>

1.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강의 및 실습, 실기)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2. 연구는 교원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학술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04.13.>
3. 산학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비 수주와 기타 수익 창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03.26.>

4. 봉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1.04.13.]

제 6 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평가영역별 평가대상 항목과 인정기준 및 배점은 별첨 1 내지 5와 같다. <개정 2015.03.26., 2016.09.01>

② 위 제1항의 배점을 득점으로 계산하는 과정에 생성되는 소수는 계산과정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04.13.>

③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천재지변, 공중보건 위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 및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만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간에 수업이 없는 교원은 제외하며, 연구년(해외연수)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제2조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0.11.04.>

제 3 장 평가절차 및 기구

제 7 조 (평가심의기구 및 심의방법) ① 업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학술연구위원회 산하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기업적평가단계는 2단계로 시행하되, 제1단계는 평가위원회, 제2단계는 교원학술연구위원회가 평가한다. <개정 2011.04.13., 2016.09.01>

③ 특별업적평가는 교원학술연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신설 2016.09.01.>

④ 평가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8조에 편성된 평가대상 집단별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원학술연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양 캠퍼스 통합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가집단(조형예술 · 디자인, 공연예술 등)의 경우 평가위원을 6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집단별 양 캠퍼스 통합 평가 여부는 교원학술연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11.04.13, 개정 2012.10.19., 2018.03.03>

⑤ 평가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4.13.>

1. 제10조에 의거하여 교원이 신고한 업적과 이 규정간의 적합성 평가 및 심의 <신설 2011.04.13.>
2. 위 제1호에 의거 심의한 업적의 득점 및 증빙자료 실사 <신설 2011.04.13.>

제 8 조 (평가대상 집단 편성) ① 평가 대상 집단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인문계열: 사학, 철학, 어문학, 교육학, 수학교육, 예술이론학, 체육학, 안보학 <개정 2018.03.02., 2019.02.14>
2. 사회계열: 저작권보호학, 지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경영학[글로벌금융경영, 지식보안경영, 문화예술경영(대), 공연예술경영], 국제통상학(무역학), 법학, 의류학, 가족복지학(가족상담 · 치료학, 아동 · 청소년상담학), 글로벌부동산, 주거학 <개정 2018.03.02., 2019.02.14>

3. 이공계열: 식품영양학, 식물식품공학, 환경조경학, 간호학, 전산학(컴퓨터과학), 게임학, 소프트웨어학, 휴먼지능로봇공학, 시스템반도체공학, 스마트정보통신공학, 경영공학, 그린화학공학, 건설시스템공학, 정보보안공학, 융합생태환경공학, 감성공학, 지능정보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화학에너지공학, 화공신소재학 <개정 2018.03.02., 2019.02.14>

4. 예능계열: 미술(조형예술학), 공예(생활예술학), 디자인(시각, 패션, 섬유, 실내, 세라믹, 텍스타일, 산업), 사진영상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공연영상문화예술(영화영상, 연극, 문화예술경영), 무대미술, 무용,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뉴미디어음악, 뮤직테크놀러지학 <개정 2018.03.02., 2019.0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평가집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평가집단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평가집단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1.04>

[전문개정 2011.04.13.][제목개정 2011.04.13]

제 9 조 (최종심의 및 교원학술연구위원회) 교수업적평가의 제2단계 평가 및 최종심의에 관한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제 기능, 구성 등은 「교원학술연구위원회 규정」이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1.04.13., 2012.10.19>

1. 제7조 제2항의 제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개정 2011.04.13.>
2.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심의
3. 재심청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 심의
4. 이 규정의 개·폐 발의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항 심의 <개정 2011.04.13.>

제 10 조 (업적등록 및 증빙물 제출)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 모든 교원은 이 규정 별첨 1 내지 5에 지정한 평가 항목에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적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2016.09.01., 2019.08.23>

② 등록한 모든 업적은 교수업적평가시 지정일까지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첨 2의 업적은 발간(표), 게재, 발행, 공연, 전시, 수상 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동일실적은 규정에 의거 본인이 선택하는 항목으로 1회(1건)한 인정한다.

제 11 조 (평가결과확정 및 통보) 최종평가 결과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며, 교원학술연구위원장은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3.>

제 12 조 (재심청구 및 조회) ① 정기업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후 7일 이내에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교원학술연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13, 2016.09.01., 2018.10.05>

② 특별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후 5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교원학술연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개정 2018.10.05.>

③ 업적평가업무 관리부서는 신고된 업적과 평가결과 등의 적합성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하자가 있을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위 제1, 2항에 의거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청구사항을 재심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3.>

제 13 조 (재심절차 및 통보) ① 재심은 이 규정 제3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1.04.13.>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을 교체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3.>

제 4 장 기 타

제 14 조 (평가관리 및 활용) ① 교수업적평가 업무는 교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11.04.13, 2012.10.19., 2018.03.03>
②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우리 대학교 내부 규정(결재)에 의해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내규에 명시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2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1.04.13.]

제 15 조 (비밀유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내부 규정(결재)에 의해서만 공개, 열람,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04.1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1.04.13.]

제 16 조 (학교 발전 기여도 반영)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업적반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세부적인 인정항목과 배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4.13>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1.04.13.][제목개정 2011.04.13]

제 17 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1.04.13.]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임조치) 이 규정 “첨부 2”의 (별표-1 내지 7)은 2000년 10월 말일까지 공표해야

하되, 결정방법은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유보조치) 이 규정 제8조 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3인미만인 전공(학과) 단위는 3인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학부단위를 최소단위로 한다.

④ (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 1항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 연구업적 중 평가받지 아니한 실적은 2000학년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10월 교수업적평가는 200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업적으로 평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학년도 1학기 등록업적 평가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장 제2조와 제4조는 2006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적용은 변경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9.09.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첨1”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적용은 변경전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0.02.1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업적 평가시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1.04.1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업적 평가시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1.06.23.]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2.10.19.]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4.02.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업적평가는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5.03.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16.01.29.]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6.09.01.]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3.01.]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3.02.]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3.03.]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10.05.]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2.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 1학기 특별업적평가는 제외한다.

[본부칙신설 2019.08.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항은 2020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20.11.04.]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12.0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학기 특별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23.05.19]

【별첨 1】 교육영역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단위배점	배점방식	최대가능점수
교과교육	담당강의시간		100점/학기	①책임시수 (9시간). 단, 공동강의인 경우 본인의 시수만 인정 ②책임시수 감면대상 교원: 일반교원의 책임시수만큼 인정	최대 100점/학기
	책임시수 미달		-20점/시간당		
	강의규모 (수강인원 6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주시수 × 10 × { 1 + (수강인원-60)/60 }	
	원어강의		+10점/시간당		
	책임시수 초과		+10점/시간당		최대 60점/학기
	강의평가		150점/학기		최대 300점/년
	강의계획서 입력		30점/학기	①30점×입력교과목수/담당교과목수 ②기한내 미입력시: 4점/강좌 감점(최대 30점)	최대 30점/학기
	고사문제지 공개		30점/학기	①30점×공개교과목수/담당교과목수 ②기한내 미공개시: 4점/강좌 감점(최대 30점)	최대 30점/학기
	휴·보강			①휴·보강 계획서 없이 결강시: 20점/회 감점 ②휴·보강 계획서 제출 후 보강미실시: 10점/회 감점	
	성적입력			기한내 성적 미입력시: 30점/교수당 감점	
	강의개선보고서(CQI)		30점/학기	기한내 미입력시: 4점/강좌 감점(최대 30점)	최대 30점/학기
	e-campus 운영		10점/과목당		최대 40점/학기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융복합 교과	30점/건	세부내용 참조	최대 100점/년
		PBL 교과	30점/건	세부내용 참조	
		원격수업 교과	15점/건	세부내용 참조	
	최신학습도구 활용 교과개발 및 운영		15점/건	세부내용 참조	최대 60점/년
학생지도	전공 학생지도	일반학생 지도		(면담학생수×1) + (상담횟수×1)	최대 100점/학기
		특별학생 지도	10점/건		최대 100점/학기
		취업전담 지도	10점/학기	*취업전담지도교수에 한함	
	자기설계학기(학점) 학생지도		30점/인/학기		최대100점/년
	석·박사배출 (교내논문지도)			석사: 15점/1인 박사: 30점/1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 5점 추가	석·박사 합산 최대 300점/년
	대회참가지도·워크숍·공연지도		10점/건/학기		최대 60점/년
	동아리지도 및 학과소모임 운영		30점/동아리·소모임/학기		최대 100점/년
	학생대상 비교과 공식활동		10점/건		최대 100점/년

4-1-4 교수업적평가 규정

구분	세부평가항목	단위배점	배점방식	최대가능점수
교육 역량 강화 활동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참여	5점/건		최대 50점/년
	법정교육 미이수	-10점/건		
	의무교수법프로그램 미이수	-50점/건		

◎ 교육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교과교육》

※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개설된 정규학기 강의만 인정

※ 계절학기(학부) 수업 불인정

1. 담당강의시간

가. 책임시수(9시간): 100점/학기당

단, 공동강의인 경우 본인의 시수만 인정

나. 책임시수 감면대상 교원: 일반교원의 책임시수 만큼 인정

2. 책임시수에서 미달하는 경우 강의시간당 20점씩 감산 (단, 출산 휴가 및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제37조 제7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

3. 강의규모(수강인원 6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인정공식: 주시수×10×{1+(수강인원-60)/60}

4. 원어강의: 수업담당 부서에서 인정한 원어강의에 한함. 시간당 10점 가산

5. 책임시수 초과: 시간당 10점 가산

6. 강의평가

가. 인정기준은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1) 문항별로 평가유효학생이 평가한 점수를 합한 후 평가유효학생수로 나누어 문항별 평균점수 구함

2) 문항별 평균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점수 구함

3) 문항별 환산점수를 합하여 교과목별 점수 구함

4) 교과목별 점수를 합한 후 교과목수로 나누어 개인별 평점 산출

다.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의인 경우 전체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점수 70%, 본인 담당과목 평가점수 30% 반영

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1)보직교수가 책임시수 감면으로 강의가 없는 경우

2)평가대상 교원이 대학원 수업만 강의하는 경우

7. 강의계획서 입력: 대학이 지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강의계획서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 인정

8. 고사문제지 공개: 직전학년도(학기)에 담당한 교과목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지(자유형식 평가고사 포함)를 대학이 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웹상에 공개 게시한 경우 인정

9. 강의개선보고서(CQI) 입력: 직전학년도(학기)에 담당한 교과목의 기말 강의개선보고서를 대학이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웹상에 입력한 경우 인정

10. e-campus 운영: 행정부서를 통한 개설 및 e-campus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운영화면, 과제 제출 사항 등)

11. 융복합교과 개발 및 운영: 대학의 융복합 교과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목으로 신설학기에 한하여 1회 인정

12. PBL교과 개발 및 운영: 대학의 PBL 교과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목으로 신설학기에 한하여 1회 인정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컨설팅 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과목에 한함.

13. 원격수업교과 개발 및 운영

가. 원격수업(e-러닝) 교과는 교육미디어혁신센터의 콘텐츠 개발 심사를 거쳐 개발 및 개설된 교과에 한함.

나. 신설 학기에 한하여 1회 인정(3학점 기준, 건당 15점)

※ 11-13의 교과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의 요청으로 교과 개발만 담당한 경우에도 인정하며, 운영자에 대한 추가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공동개발 및 운영의 경우 1/n로 분배하여 적용

14. 최신학습 도구 활용 교과 개발 및 운영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도구(Github, Cloud, 3D프린터 및 오픈소스 SW 등)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교과목에 한함.

나. 신설학기에 한하여 1회 인정

※ 최신 학습도구를 활용한 교과목 선정 여부는 각 단과대학별(혹은 교수 개별)로 'SW중심대학사업단"으로 신청하며, "SW중심대학사업단" 내 자체위원회에서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함.

※ 최신 학습도구의 범위는 학문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함.

《학생지도》

1. 전공학생지도

가. 일반학생지도: 평생지도교수 또는 평생지도 학생이 없을 경우 실제적인 면담지도를 담당하고 인터넷 학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인정(제2전공 지도교수, 자기설계융합전공 지도교수, SM-CDR 지도교수 포함)

나. 특별학생지도: 장애학생 및 단과대학장/학생처장이 지정한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지도교수로 임명되어 실제적인 면담지도를 담당하고 인터넷 학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인정(외국인학생 제외)

2. 석·박사 배출: 교내 석·박사과정의 학생을 지도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인정

3. 자기설계학기(학점) 학생지도: 본교 자기설계학기(학점) 학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 말 증빙물을 제출 한 경우 인정

4. 대회참가지도·워크숍·공연지도: 교외 각종 대회 (학술대회, 공연예술, 경기 등)에 참가, 출연, 출품, 출전을 지도하고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와 교과과정 이외로 교내(외)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공연을 직접 지도하고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5. 동아리지도 및 학과소모임 운영: 본교 동아리등록 규정에 의거 승인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임명되어 동아리의 실질적인 지도 및 활동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모임(학과/전공 이상의 단위 규모)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이 승인한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교원 복수의 지도 활동도 인정하며 이 때의 인정률은 '1/지도교수 총인원'으로 한다.)

6. 학생 대상 비교과 공식활동: 단과대·학부(과)·전공·연구기관·센터·행정부서 주최 학생대상 공식 프로그램을 주관(또는 참여지도)하고 그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교육역량강화활동》

※ 교육역량 강화활동: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그 증빙내역을 제출한 경우

1.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참여: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속 전공 관련 분야의 교육을 8시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또는 교내 교육프로그램/설명회 이수시 및 단과대학 이상 단위의 공식 활동에 한함.(전체 교수회의 또는 단과대학 워크숍, 연구윤리교육, 단과대학 교수 회의 등)

2. 법정교육 미이수: 법정 필수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감점

3. 의무교수법프로그램 미이수: 강의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교수법 프로그램을 기간 내에 미이수 하였을 경우 감점

4-1-4 교수업적평가 규정

【별첨 2】 연구영역 평가항목 배점표(예·체능계열의 창작연구, 실기분야 제외)

구분	세부평가항목		단위배점	최대가능점수	비고
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Q1: 1400점/편 Q2: 1100점/편 Q3: 840점/편 Q4: 700점/편		
		SCI(E)에 등재된 학술지	Q1: 1000점/편 Q2: 800점/편 Q3: 600점/편 Q4: 500점/편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250점/편		
	국제일반학술지		200점/편		
	국내저명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200점/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50점/편		최대500점/년
	국내학술대회 발표		20점/편		최대200점/년
저서	문학, 학술단행본		300점/권		
	사전, 용어집, 편람		250점/권		
	번역서		250점/권		
	편저서		100점/권		
	교과서		150점/권		
	외국어 및 자격증 학습교재		70점/권		
	작품모음집 단행본 발표		30점/편		
	문예지 발표	정기(월간, 계간, 연간)	60점/편		
		비정기	30점/편		
기타저술	학술논평 (평론, 해설, 서평 포함)		10점/건		
수상	국제저명상		200점/건		
	국내저명상		100점/건		
	국가 포상 및 훈장		200점/건		

◎ 연구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 교원 개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만 인정하며 중복 불인정

※ 발간, 발표, 게재, 발행, 공연, 전시, 수상 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논문》

※ 법인등록된 학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단체로서 논문심사 과정을 거쳐 발간되는 학술지만 인정. 심사가 있더라도 학술대회 프로시딩 및 프로시딩 모음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제)저명학술지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

※ 전문학술단체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출판사가 발행한 학술논문집 또는 전문연구서 중의 학술논문일지라도 (저자가 각 장에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형태가 책인 경우 저서로 인정

※ 학술대회는 국내(제) 학회 또는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제) 학술대회만 인정

※ 발표는 구두발표, 프로시딩, 초록, 포스터, 슬라이드 등을 포함

※ 발표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내(제) 학술대회 발표로 프로그램에 등재되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경우만 인정

1. 국제저명학술지: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다만, 한국연구재단 정규논문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논문만 인정
2. 국제일반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학술지로 회원이 5개국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인 학술단체가 연 2회 이상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심사 제도가 있고 논문심사위원 1/3 이상이 외국인이며, 논문 게재자가 3개국 이상, 외국어로 된 학술지
3. 국내저명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4.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인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저서》

※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문예창작집(물), 학술서적만 인정

※ 저자와 발간자가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문예창작집(물), 학술서적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로 반드시 ISBN을 부여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 발행한 상업 창작집, 공연·전시에 의해 발표된 희곡(시나리오, 각색 포함)집, 평론집, 사진집 등의 문예창작물과 학술서적

※ 권의 경우, 초판은 업적의 100%, 개정판과 증보판은 초기점수의 30%를 부여

※ 편의 경우, 최초 발표만 인정

※ 번역서의 경우, 원저의 권수를 따름

※ 편저서의 경우, 단행본에 명시된 편저자에 한하여 인정

※ 편저자 외 저술 참여의 경우, 작품모음집 발표와 동일 기준 적용

1. 문학, 학술단행본: 외국 영화 시나리오인 경우 미국극작가협회(Writers Guild of America) 인증번호가 있는 시나리오만 인정. 국내 영화 시나리오인 경우 영화관련 제작사의 계약서 첨부 시 인정
2. 번역서: 국내(외) 전공분야 학술서적 및 문예창작물을 외국어 또는 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

3. 편저서: 여러 사람들의 논문 및 문예창작물을 묶어 편집, 출판한 서적
4.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1, 2종 교과서
5. 외국어 및 자격증 학습교재: 외국어 및 국가공인 자격증 획득 학습을 위한 교재
6. 작품모음집 단행본 발표: 여러 작가의 창작작품을 모은 단행본에 작품 발표(예·체능계열 창작작품집 포함. 단, 전시도록은 제외)
7. 문예지 발표: 정기(월간, 계간, 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문예지 발표 작품(사진 작품 포함)

《기타저술》

1. 학술논평: 국내(외)학술지, 전문잡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전공분야의 논평, 평론, 해설(해제), 서평인 경우 인정 단, 시리즈물은 1건만 인정

《수상》

※ 수상은 국내(제)학·예술단체, 국가 및 공공단체, 대학 또는 사회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본인이 수상한 상에 한하며 동일 단체 수상 건은 연1회 인정

※ 교내 수상은 제외

1. 국제저명상: 전공분야의 학술업적에 대하여 국제저명학회(학술단체), 국제기구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수여하는 수상(세계인명사전 등재 및 관련 수상 제외)
2. 국내저명상: 전공분야의 학술업적에 대하여 국내저명학회(학술단체), 국내공인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수여하는 수상(우수학술포스터상 제외)
3. 국가 포상 및 훈장: 전공분야 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포상 및 훈장

《연구영역 인정공식》

※ 학술논문 및 학술대회 인정공식

※ 학술논문에서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책임저자,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한함)

1. 학술논문, 학술대회, 공동연구 (n: 연구참여자 수)
   - 가.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 (n<10)
     - 1) 연구책임자: $2/(n+1) \times 100\%$
     - 2) 공동연구자: $1/(n+1) \times 100\%$
   - 나.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1/n \times 100\%$ (n<10)
   - 다. 연구자 수에서 연구조원으로 참석한 본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제외
   - 라. 연구참여자수 10명 이상인 경우: $1/10 \times 100\%$(단, 연구책임자가 본인일 경우 위 '가'적용)

※ 저서의 저자 수는 각 chapter별 저자 수를 모두 합산
(예: 동일인이 3 chapter 기술에 참여한 경우 저자 수는 3인으로 계산)

※ 본 대학 소속 교수가 저서에서 저술한 chapter 수에 해당하는 점수 인정

2. 저서(n: 저자 수, k: 해당 교수가 저술한 chapter 수)
   - 가. 저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k/n \times 100\%$
   - 나.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최소 10% 인정

【별첨 2-1】 미술(조형예술학), 공예(생활예술학), 디자인(시각, 패션, 섬유, 실내, 세라믹, 텍스타일, 산업), 사진영상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계열
창작 및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전시	국제	저명단체 주관	개인전	350점/건	
			단체전	100점/건	
		일반단체 주관	개인전	300점/건	
			단체전	90점/건	
		기타단체	단체전	50점/건	
	국내	저명단체 주관	개인전	250점/건	
			단체전	60점/건	
		일반단체 주관	개인전	200점/건	
			단체전	50점/건	
		기타단체	단체전	30점/건	
전시 기획	국제	전시 기획 총감독		200점/건	
		전시 기획 커미셔너, 큐레이터		150점/건	
	국내	미술관 전시기획		100점/건	
		기타 비상업적 전시 기획		50점/건	

4-1-4 교수업적평가 규정

◎ 미술(조형예술학), 공예(생활예술학), 디자인(시각, 패션, 섬유, 실내, 세라믹, 텍스타일, 산업), 사진영상콘텐츠, 만화・애니메이션 계열 평가항목 인정기준

※ 참가인원에 따른 구분
1. 1~3인전: 개인전
2. 4인 이상: 단체전

※인정비율
1. 1인 100%
2. 2인 70%
3. 3인 50%

※ 유형의 창작예술 발표로서 전시, 설치 및 디자인 등을 인정

※ 연구결과물은 인정기준에 따라 전시팜플렛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 사진, 동영상,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택하여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단, 순회전일 경우 2회까지 인정하며 이 때의 인정률은 50%로 함.

※ 일반 개인전은 일반화랑 및 비상설 개인전, 부스전을 포함하여 인정

※ 전시기획은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전시기획, 국내 공인 미술관 및 비상업적 전시기획으로 저명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내·외 전시와 전시기획의 수준은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 인정기준: 표2-1-1

<표 2-1-1>

항목	1					2					3			4						5						비고
	1-1 (단체전)			1-2 (개인전)		2-1 (단체전)			2-2 (개인전)					4-1 (단체전)			4-2 (개인전)			5-1 (단체전)			5-2 (개인전)			
세부 항목	참가국 수			주최자		전시참가인원 (규모)			전시참가 인원		주최기관			개최연혁			전시장인지도			전시장규모			전시장규모			
조건	8개국이상	4개국이상	2개국이상	초대	개인	50명이상	20명이상	4명이상	단독	2~3인참가	국가(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일반지자체·문화단체·사업자등록단체	개인 및 기타	10회이상	5회이상	1회이상	각국의대표전시장	공인된전시장	기타	100평이상	50평이상	30평이상	30평이상	15평이상	15평미만	
점수	20	15	10	20	10	20	15	10	20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등급	A	B	C	A	B	A	B	C	A	B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 ○-1은 4인 이상 단체전 평가기준이며 ○-2는 개인전 평가기준
단, 항목 1의 경우 국제 단체전은 1-1 적용, 국내 단체전은 2-1를 적용한다.

1. 필수영역: 1, 3, 5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 저명연구발표 : 필수항목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90점)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나. 국제 일반연구발표 : 개인전은 최고점수(100점)의 60%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단체전은 최고점수(100점)의 70%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다. 국제 기타연구발표 : 단체전은 최고점수(100점)의 70%미만 충족될 경우 인정
   라. 국내 저명연구발표 : 개인전은 필수항목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단체전(2 내지 5항목 적용)은 3, 5 항목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80점)의 90%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마. 국내 일반연구발표 : 개인전은 최고점수(100점)의 60%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단체전(2 내지 5항목 적용)은 최고점 수(80점)의 70%이상 충족될 경우 인정
   바. 국내 기타연구발표 : 단체전(2 내지 5항목 적용)은 최고점수(80점)의 70%미만 충족될 경우 인정

【별첨 2-2】 공연영상문화예술(영화영상, 연극, 문화예술경영), 무대미술, 무용 계열 창작 및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전시, 배급·공연	국제	저명단체 주관	개인전/배급·공연	350점/건	
			2-3인전/배급·공연	250점/건	
			단체전/배급·공연	90점/건	
		일반단체 주관	개인전/배급·공연	300점/건	
			2-3인전/배급·공연	200점/건	
			단체전/배급·공연	70점/건	
	국내	저명단체 주관	개인전/배급·공연	250점/건	
			2-3인전/배급·공연	150점/건	
			단체전/배급·공연	60점/건	
		일반단체 주관	개인전/배급·공연	200점/건	
			2-3인전/배급·공연	100점/건	
			단체전/배급·공연	50점/건	
		기타단체 주관	개인전/배급·공연	100점/건	
			2-3인전/배급·공연	80점/건	
			단체전/배급·공연	40점/건	

◎ 공연영상문화예술(영화영상, 연극, 문화예술경영), 무대미술, 무용 계열 평가항목 인정기준

※ 영화(영화영상전공)
대본, 연출, 제작, 주연, 촬영의 경우 100% 인정, 이외 역할은 70% 인정

※ 공연, 방송, 영화(연극학과, 공연영상미술학부, 무용전공)
대본, 연출, 제작, 주연, 안무, 예술감독 및 각 분야의 스태프장은 100% 인정, 이외 역할은 70% 인정

※ 본교 재학생들의 작품에 참여한 경우는 불인정

※ 동일작품에 한하여 연 1회 재공연(전시)한 경우 50% 인정

※ 동일작품은 최종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정

※ 인정기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인정

※ 인정기준: 표 2-2-1, 표 2-2-2

※ 국제저명연극제는 아비뇽 연극제, ITI Theatre of Nations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 등 및 이와 동등한 등급이라 판단되는 연극제에 한하여 인정

※ 국제저명영화제는 깐느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및 이와 동등한 등급이라 판단되는 영화제에 한하여 인정

<표 2-2-1>

항목	1						2			3									4		5						비고
세부항목	참가국수/주최기관						참가인원			작품길이									초연재연		공연장(극장)규모						
	1-1			1-2						3-1			3-2			3-3					실내			실외			
	해외공연			국내공연						공연, 연극, 무대			영화			무용											
조건	10개국이상	5개국이상	3개국이상	국가(정부)·시/도단위주요문화단체	기초자치단체·문화단체·사업자등록단체	개인및기타	30명이상	15명이상	5명이상	70분이상	41분~70분	10분이상	장편	중편	단편	40분이상	20분이상	10분이상	초연	재연	401석이상	100석~400석	50석이상~100석미만	216㎡ (18m X 12m) • 객석 1500석 이상	135㎡ (15m X 9m) • 객석 1000석 이상	108㎡ (12m X 9m) • 객석 500석 이상	
점수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0	20	15	10	20	15	10	
등급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A	B	C	A	B	C	

1. 최고점수는 100점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 저명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1, 2, 4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 일반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다. 국제 기타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의 50% 이상 내지 80% 미만 범위 충족할 경우 인정

라. 국내 저명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마. 국내 일반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바. 국내 기타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의 50% 이상 내지 80% 미만 범위 충족할 경우 인정

<표 2-2-2>

분 류	기 준
작품길이 구분	1. 영화 가. 장편: 70분 이상 나. 중편: 30분 이상 ~ 70분 미만 다. 단편: 30분 미만 2. 연극: 장막(70분 이상) 3. 항목 3-1, 3-2, 3-3은 분야에 따라 선택 적용
작품공개	1. 전시는 공개된 동일 작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50% 인정 2. 공연 출품의 경우 재연은 1년에 한하여 초연과 같은 조건(연출, 공연장)의 경우 재공연으로 판정하여 50% 인정 3. 영화/애니메이션 작품 출품의 경우 제작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1회 100%, 2회 50% 인정
연결된 공연 전시의 복수 평가 인정 범위	1. 전시, 공연, 영상의 경우 동일 사안(작품)에서 복수 참여시 한분야만 인정 2. 시나리오와 연출은 중복될 경우 한 영역은 50% 인정
공연인정 증빙자료	1. 해외 공연일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이름이 명기된 초청장 또는 계약서 2. 초청단체의 공연프로그램에 소개된 작품제목 또는 내용이 명기된 공연프로그램 3. 사진(4매 이상) 또는 동영상 중 택1 4. 공연에 연출, 작가로 참여할 경우 대본 제출

【별첨 2-3】 음악 계열 창작 및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음악 계열 공통	발표	국제	저명	독주회 (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회, 지휘(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 합창전체프로그램) 오페라 주역	350점/건	
				협연		
				국제 음악제 작품 위촉 발표		
			일반	독주회(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	300점/건	
				2인 연주회	210점/건	
				오케스트라와 협연 1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300점/건	
				오케스트라와 협연 2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210점/건	
				국외 공연기관 또는 학술기관의 초청연주(강연)	300점/건	
		국내	저명	독주회 (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회, 지휘(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 합창전체프로그램) 오페라 주역	250점/건	
				협연		
				국내 음악제 또는 국내 공연기관 초청 작품발표(작곡)		
			일반	독주회(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	200점/건	
				2인 연주회	140점/건	
				오케스트라와 협연 1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140점/건	
				오케스트라와 협연 2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100점/건	
		음원발매, 상업음악(영화, 드라마, 광고 등) 연주			30점/건	
피아노	발표	2인 공동 발표			140점/건	
		3-5인 공동 발표			100점/건	
		6인 이상 공동 발표			60점/건	
	반주	전체 프로그램			140점/건	
		2인 공동 반주			100점/건	
		1 stage 반주			60점/건	
성악	발표	2인 공동 발표			140점/건	
		3-4인 공동 발표			100점/건	
		5인 이상 공동 발표			60점/건	
	출연	오페라 주역			200점/건	
		오페라 조역			140점/건	
	협연	오라토리오 전곡			140점/건	
		오라토리오 일부			100점/건	

4-1-4 교수업적평가 규정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작곡	수상	국내(제) 콩쿨 입상		200점/건	
	발표	관현악곡, 교향곡, 오페라, 뮤지컬, 발레(2막 이상), 미사, 칸타타, 오라토리오 작곡 발표		200점/건	
		10인 이상 챔버오케스트라, 연가곡 작품 발표		160점/건	
		2인 공동 작곡 발표		140점/건	
		5-9인 실내악, 합창곡 작품 발표		140점/건	
		영화, 영상, 연극, 멀티미디어, 행위예술, 다큐멘터리음악 작곡 발표	60분 내외	140점/건	
			30분 내외	80점/건	
		1-4인 실내악(전자음악 포함)		100점/건	
		가곡, 편곡 작품 발표		80점/건	
		방송의 상용시그널 음악 작곡 발표, 게임음악 작곡 발표		60점/건	
		악보출판		30점/건	
관현악	연주	3-5인 전체 프로그램 연주		100점/건	
		1 Stage 연주		60점/건	
		10인 이상 공동연주(동일단체에서 연주 년 2회만 인정)		60점/건	
	지휘	전문오페라, 교양악단 단독 지휘		140점/건	
		10인 이상 전문실내악단, 합창단 전체 프로그램 지휘		140점/건	
		대학 오케스트라, 대학 합창단 등 이에 준하는 단체의 단독 지휘		100점/건	
		연주회의 공동, 부분 지휘(동일단체에서 지휘 년 2회만 인정)		60점/건	

◎ 음악 계열 평가항목 인정기준

※ 동일 내용의 연구업적 중복 불인정

※ 동일 레파토리로 1년 이내의 연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재연주는 2년 이후 5년까지 그 80%를 인정

※ 세부전공(관현악 전공인 경우 악기)과 불일치하는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70%, 년 2회 인정

※ 국내(제) 인정기준: 표 2-3-1

<표 2-3-1>

항목	1-1			1-2			2			3			4			4-1			5-1			5-2			5-3			비고
세부항목	참가국(작곡)			공연장 인지도			주최기관			공연장 규모			연주시간			작품길이(작곡)			연주인원(피아노,성악,관현악)			작품규모/연주인원(작곡)			참가인원수(작곡-국제음악제)			
조건	10개국이상	5개국이상	2개국이상	A급	B급	C급	국가(정부)·주요문화단체·광역자치단체	일반지자체·문화단체·사업자등록단체	개인 및 기타	5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미만	60분이상	30분이상	10분이상	12분이상	5분이상	5분미만	독주회	2-4인·협연	5인이상	10인이상	4인이상	4인미만	30인이상	20인이상	20인미만	
점수	20	15	12	20	15	12	20	15	11	20	15	11	20	15	11	20	15	11	20	15	11	20	15	11	20	18	11	최고점: 100점 최저점: 50점
등급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1. 필수영역

가. 성악, 피아노, 관현악: 1-2, 3, 4

나. 작곡: 2, 4-1, 5-2

다. 작곡(국제음악제): 1-1, 2, 5-3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저명발표: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일반발표(피아노, 성악, 관현악): 1-2, 3, 4, 5-1 항목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국제일반발표(작곡): 1-2, 3, 4-1, 5-2 항목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국제일반발표(작곡·국제음악제): 1-1, 2, 4-1, 5-3 항목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다. 국내저명발표: 필수항목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라. 국내일반발표(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최저점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3. 공연장 인지도 기준

A급: 카네기홀, 링컨센터에 준하는 국제적 공연장/ 각국의 대표 공연장

B급: A, C급을 제외한 공연장

C급: 대학소재 공연장

*국제: 공연장 인지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공연장 정보 및 공연일정 자료(3개월 이상) 등)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공연장

4-1-4 교수업적평가 규정

【별첨 3】 산학영역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단위배점	배점방식	최대가능점수
산학연구	제안서		60점/건		
	보고서		30점/건		
	인문, 사회, 예·체능 수탁실적	산업체제외	100만원당 5점 비율		
		산업체(민간, 외국)	100만원당 15점 비율		
	자연, 공학 수탁실적	산업체제외	100만원당 2.5점 비율		
		산업체(민간, 외국)	100만원당 5점 비율		
	간접비 수익		100만원당 40점 비율		
산학연계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	10점/팀/학기		최대 200점/년
		비교과과정	10점/팀/학기		최대 200점/년
	산학연계교육과정/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20점/건		최대 100점/년
	현장실습운영	학기제	10점×학생수/학기		최대 100점/년
		계절제	5점×학생수/학기		최대 100점/년
	현장실습유치		50점/건		최대 200점/년
	기술경영자문	외부기업	10점/건		최대 100점/년
		입주기업	5점/건		최대 100점/년
	발전협약교류(인적, 물적교류)		20점/건		
	가족기업유치 또는 관리		10점/기업		최대 100점/년
	산업체 파견		10점/개월		최대 100점/년
	산업체특강		5점/건		최대 100점/년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30점/건		
취·창업	교원창업		100점/건		
	학생창업		200점/건		
	취·창업교육지도		10점/건		최대 100점/년
	취·창업동아리지도		30점/동아리/학기		
지적재산권	특허등록	국제	200점/건		
		국내	100점/건		
	디자인등록		20점/건		
	저작권등록		50점/건		

구분	세부평가항목	단위배점	배점방식	최대가능점수
지적 재산권	기술이전	50점/100만원		
	SW 등록	50점/건		최대 100점/년

4-1-4 교수업적평가 규정

◎ 산학영역 인정공식

※ 제안서, 보고서,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간접비 수익, 지적재산권 인정공식

1. 제안서, 보고서,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간접비 수익, 지적재산권 공동연구

(n: 본교 소속의 공동연구자 수)

가. 연구책임자 100%인정

나.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이래의 기준에 따름.
단, 교외연구과제의 경우 평가 시행일 이전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1)연구책임자: 2/(n+1) × 100%

2)공동연구자: 1/(n+1) × 100%

3)연구참여자수 10인 이상인 경우: 1/10 × 100%

다. 공동연구자(원)에서 연구조원으로 참석한 본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제외

◎ 산학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산학연구》

※ 교원 개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만 인정하며 중복 불인정

※ 발간, 발표, 게제, 발행 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1. 제안서: 정부, 비영리단체 및 일반기관 용역 제안서
(기술수요조사 제외, 동일과제에 대한 중복 제출 건은 1건으로 인정, 산학협력단에 제출 승인한 제안서(연구계획서) 제출신청서 한하여 인정)
2. 보고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로서 위탁자가 연구종료를 승인한 과제연구에 한하며,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
3. 수탁실적: 산단회계는 100% 인정하며 교비회계는 직접지원금만 포함

가. 외부기관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수혜액 실적
단, 교비 또는 산학협력단 대응투자금액은 당해년 연구비 수혜액에서 제외하고 반영함.

나. 산입기준은 평가인정기간내의 건당 입금액 반영

다. 연구과제 수행 불이행(연구계약 해지)된 경우는 차기 평가에서 불이행분에 해당되는 점수 감점

4. 간접비수익: 평가 기간 내에 발생된 간접연구비만 인정

《산학연계》

1. 캡스톤디자인 지도

가. 교과과정: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개설 인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무처 및 관련부서가 인정한 교과목의 팀과제로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한 팀을 지도한 경우 인정

나. 비교과과정: 취·창업 관련 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캡스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의 지도교수로 임명되어 실질적인 지도 및 활동이 있는 경우 인정

2. 산학연계교육과정/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업 및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여 산업체와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또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인정하며, 산학협력단 및 교무처 등 행정부서의 확인을 통해 점수 인정

3. 현장실습운영: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의 현장실습 및 교과과정 외의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현장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현장실습유치: 현장실습 기업을 유치하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시행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인정.
5. 기술경영자문
   가. 외부기업: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등의 외부기업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하고 산학협력단에 산업자문 신청서 및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나. 입주기업: 본 대학 입주기업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하고 관련 행정부서에 컨설팅 일지 제출한 경우 인정
6. 발전협약교류(인적, 물적교류): 대학명의(또는 산학협력단)로 대외협약을 체결하는데 직접 기여하여 협약을 완료한 후, 교류 실적 결과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7. 가족기업 유치 또는 관리: 산학협력단에 가족기업 및 사회맞춤형학과 참여기업 협약서 제출시 신규기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연구 개발 및 프로젝트 진행, 연구장비 공동활용, 현장실습, 재직자 교육참여, 대학장학금 지급 및 지원금 참여, 학생 취업연계 등의 실적을 담당부서에 제출시 인정
8. 산업체파견: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동안 1개월 이상 산업체 파견활동 후 실적 결과 증빙물 제출시 인정
9. 산업체특강: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강을 실시한 실적으로 실적증빙물 제출시 점수 인정
10.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본 대학의 승인을 받은 대학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유치 실적으로, 산학협력단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취·창업》

1. 교원창업
   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본교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시행한 자
   ※ 현장실습기준: 현장실습비를 지급[2인 이상/2개월 이상(인당)]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2. 학생창업: 학생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동의서(서명/날인 및 기여 교수 1인 지명)를 증빙물로 제출한 경우, 취·창업교육지도 및 취·창업동아리지도의 성과로 창업한 경우, 교수의 실질적 기여가 확인되는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취·창업교육지도: 교내 취·창업 교과목 및 프로그램의 개설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4. 취·창업동아리지도: 취·창업 관련 행정부서에 등록되어 행정부서에서 승인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임명되어 실질적인 지도 및 활동이 있는 경우 인정

《지적재산권》

1. 특허, 디자인
   가. 본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한 경우 인정
   나. 동일건으로 국가를 달리하여 등록한 경우 1건으로 인정
   다. 동일건으로 국내특허를 취득한 후 국제특허를 취득한 경우, 국제특허 점수에 기 인정받은 국내특허 점수를 삭감한 점수 인정

※지적재산권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되는 특허, 디자인을 산학협력단에 권리를 양도하여 등록 하였을 경우 인정

2. 저작권등록

가. 해당 기관에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인정

나. 다른 항목의 연구업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기술이전: 본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한하며 기술이전료 수입이 완료 된 경우에 인정

4. SW 등록: 소프트웨어 등록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오픈소스 SW 최초버전개발은 소프트웨어 등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별첨 4】 봉사영역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단위배점	배점방식	최대가능점수
대학 봉사	보직 봉사	부총장		300점/년	1. 단위배점×근무기간일수/365 2. 겸임보직자인 경우 상위 1개 보직은 배점의 100%를 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보직은 배점의 50% 인정	최대 300점/년
		교무위원		200점/년		최대 200점/년
		부속(설)기관장급		150점/년		최대 150점/년
		부단장, 부장, 교육단위부서장		100점/년		최대 100점/년
		특정연구기관장, 산학협력단 내의 센터장		50점/년		최대 50점/년
	위원회 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50점/건		
			위원	40점/건		
		일반위원회		20점/건		
	교내교육프로그램 봉사			10점/강좌/건		최대 80점/년
	교내 입시봉사			10점/건		
	발전기금기탁			10점/100만원	100만원 이상부터 인정 및 10만원 단위로 적용	
	학교기업 운영			300점/년		
대학 특별 봉사	대학중점사업	제안서		최대100점/인	사업책임자가 최대 점수 내에서 참여자 점수 결정	
		수행 또는 보고서		최대80점/인	사업책임자가 최대 점수 내에서 참여자 점수 결정	
	대학정책평가	보고서		최대150점/인	사업책임자가 최대 점수 내에서 참여자 점수 결정	
	발전기금수탁교류			10점/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부터 인정 및 1,000만원 단위로 적용	
	국고지원사업 대학 수주사업비			100만원당 10점 비율		최대300점/년
대외 봉사	전문가 봉사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봉사		10점/건		최대 300점/년
		전문가급 봉사		10점/건		
		정부부처 위원 봉사		60점/건		
		교육자 봉사		10점/건		
		전문고사 출제		20점/건		
		집필봉사		10점/건		
		대학홍보		10점/건	최대 100점/년	
	학회 (학술단체) 활동	학회(학술단체)장		20점/건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만 인정	
		학회(학술단체) 임원		10점/건	이사, 감사, 편집위원	
		학술대회		10점/건	학술대회 사회, 좌장, 지정토론, 기조연설 활동에 한하여 인정	

◎ 봉사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대학봉사》

※ 교내 입시관련 심사, 교내 교원 승진 및 임용관련 심사에 활동한 실적은 제외

1. 보직 봉사: 보직봉사 평가항목 적용대상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가. 부속(설)기관장급
   나. 부단장, 부장
   다. 특정연구기관장, 산학협력단 내의 센터장
   라. 확대 교무위원은 부속(설) 기관장급으로 인정
   마. 교육단위부서장: 학(부)과장, 전공주임교수
2. 위원회 봉사
   가. 전문위원회: 특정사업이나 제도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 단, 당연직 교무위원 불인정
   나. 일반위원회: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로 복수 인정. 단, 당연직 교무위원 불인정
   ※ 대학중점사업 및 대학정책평가와 관련된 위원회는 불인정
3. 교내교육프로그램 봉사
   가. 계약학과, 평생교육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강의를 담당한 경우 인정
   나. 본 대학(원)이 개설한 일반인(교직원 및 중고생 포함)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의를 담당한 경우 인정
   다. 특별학기 개설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인정
4. 교내 입시봉사: 본교 입시과정에 참여한 활동 인정(단, 담당부서에서 인정한 공식 활동에 한하여 인정)
5. 발전기금기탁: 본인이 직접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한 경우 인정
6. 학교기업 운영: 학교기업 운영 실무담당자에게 점수 인정

《대학특별봉사》

1. 대학중점사업
   가. 대학주요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등 해당 여부는 총장이 정함.
   나. 학년도 내 수행 또는 보고서 중 택1(학년도 내 수정 불가)
2. 대학정책평가: 대학주요정책평가 및 이와 유사한 평가 등 해당 여부는 총장이 정함.
3. 발전기금수탁교류: 대학발전 후원자(단체)를 섭외하여 발전기금을 기탁 받는 교류에 직접 기여한 경우 인정 (현물일 경우 평가액 및 전적기준을 별도 심의 후 적용)
4. 국고지원사업 대학 수주사업비: 대학 주관 대학중점 사업비 수주실적이 있는 해당 연도에 사업신청보고서 또는 실적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 인정

※ 국고지원사업 대학 수주사업비 인정공식

(n: 본교 소속의 공동연구자 수)

가. 연구책임자 100%인정

나.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이래의 기준에 따름.

1)연구책임자: $2/(n+1) \times 100\%$

2)공동연구자: 1/(n+1) × 100%
3)연구참여자수 10인 이상인 경우: 1/10 × 100%

《대외봉사》

※ 전공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문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만 인정
※ 연간 대외봉사는 최대 300점으로 제한
※ 학회(학술단체)는 전국규모 이상이며, 단체는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에 등록된 순수학(예)술 협회만 인정
※ 학회(학술단체)의 장 및 임원 활동에서 동일단체의 임원 직책 중복 불인정, 년 1회만 인정
단, KCI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학회에 한하여 인정
※ 봉사 결과에 대한 증빙에 한하여 인정

1.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봉사: 지역 및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봉사 활동(미화캠페인 참여, 장애인 돕기 참여 등 일체의 대외활동)으로 해당 단체 혹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
2. 전문가급 봉사
   가.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에서 전문가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사회봉사
   나. 예·체능계 각종대회 및 공연에 전문가로서 심사 및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정
   다. 학회(학술단체)논문심사, 교내(외) 입시관련 심사, 타 대학 석·박사 논문심사, 교내(외) 교원 승진 및 임용관련 심사에 활동한 실적은 제외
3. 정부부처 위원 봉사: 장관급 이상 임명자인 경우에만 인정
4. 교육자 봉사: 교과과정 외로 본 대학 학생을 봉사주체로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회봉사 및 교내 봉사 활동으로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5. 전문고사 출제: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학교 제외)이 시행하는 전문고사에 출제의원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
6. 집필 봉사: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의 기관지에 전문가로 집필활동을 한 경우 인정
7. 대학홍보: 언론(대외홍보활동/언론활동)을 통하여 대학 이미지 향상 홍보 활동자
   가. 방송사 출연 또는 언론사 보도: 10점/건
   나. 교수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활동으로 대학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본교 교원임을 명시한 활동에 한함. (해당 행정부서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첨 5】 특별업적평가

- 특별업적평가제도
  - 대상자: 재임용심사 대상자
  - 평가기간: 재임용심사 당해연도의 1학기(9.1일자 재임용자),
    또는 1,2학기(3.1일자 재임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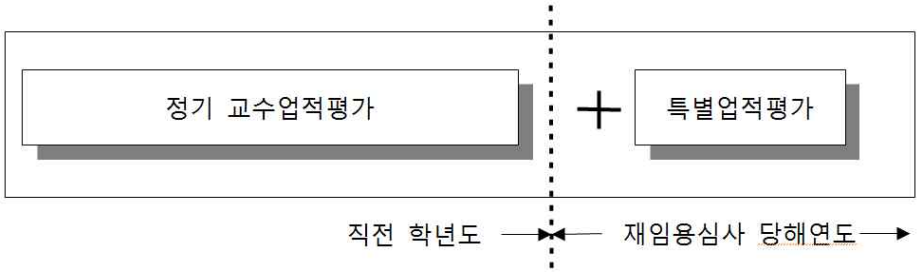

- 제출자료

구분	3.1일자 재임용	9.1일자 재임용
제출 서류	▪ 정기교수업적평가에서 누락된 업적자료[1] ▪ 1,2학기 교수업적자료[2] (교육/연구/산학/봉사)	▪ 정기교수업적평가에서 누락된 업적자료[1] ▪ 1학기 교수업적자료[2] (교육/연구/산학/봉사)

[1] 재임용기간 중에 교수업적평가에서 누락된 업적자료.
※ 누락된 업적자료의 인정은 해당학년도의 과거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2] 교육중점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점수만 해당.
행정부서가 제출가능한 교수업적 이외에는 재임용대상자 본인이 제출.
재임용기간 마지막 학기의 업적점수 중 일정상 반영이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조건부로 만점 처리함.